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52호 2018. 05. 03.(목)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8-611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2
- 사천시 공고 제2018-613호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4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552호(2)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8 - 611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 5. 3.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8. 5. 3. ~ 2018. 5. 18.(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88노7202	현대활어운반차 (터보)	박*성	2018. 4. 30.	소유자요청(불명자 운행)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552호(3)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055-831-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 552 호 (4)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8-613호

2018/2019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우리 시 「2018/2019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우리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3일

사 천 시 장

1. 총 괄

어업별	개발방법	승인요청		승인		조건부승인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계		4	46.15	2	36.4	2	9.75
협동양식	재개발	3	41.15	2	36.40	1	4.75
패류양식	신규개발	1	5.00	-	-	1	5.00

2. 승인조건

-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시 부여한 조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불협의를 수면에 대하여는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
- 나. 승인된 수면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업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어업면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

사 천 시 공 보

제552호(5)

- 다. 승인된 수면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타 어업과 분쟁이 예견·발생되는 경우 그 민원 및 어업 분쟁을 해소한 후 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라. 승인된 수면에 대해서는 여객선 등 선박의 항로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마. 신규·재·대체개발시 기존 어장 및 개발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어망 및 폐어구 수거 등 어장청소완료를 확인한 후 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바. 신규·재·대체개발시 해당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상품이 개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어업면허 처분하여야 한다.
- 사. 승인된 개발수면에 대한 면허처분은 우선 순위자 결정 결과에 따라 어장면적 및 수면의 한계, 어장간의 거리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 아.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어장경계구역 야간 표시시설의 설치방법 및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자.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어장수심한계를 준수하여 신규·재개발하여야 하며, 재개발시 기존 면허구역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맞도록 어장실측, 양식어장과와의 중첩, 어항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업면허 처분하여야 한다.
- 차. 위(가~자) 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과 2018/2019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3. 2018/2019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어업명칭	어업종류 (양식방법)	수면위치	면적 (ha)	승인여부	수면번호	비고
총계	4건		46.15			
협동양식	협동양식	사천대방	4.75	조건부 승인	1	협동양식 사천제5호 기간만료 재개발 (패류양식 바닥식 신규개발시 어업권 포기 조건)
		사천실안	20.00	승인	2	협동양식 사천제6호 기간만료 재개발
		사천대포	16.40	승인	3	협동양식 사천제7호 기간만료 재개발
패류양식	바닥식 (살포식)	사천대방	5.00	조건부 승인	1	신규개발 (협동양식 사천제5호 4.75ha 포기 조건)